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10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1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32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53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61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67면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73면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	80면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95면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106면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134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5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 일 정혜영 의원 외 14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4개를 통합하여,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함

나. 제2장 의원(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선서, 사직,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및 심의 등을 정함.

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의장의 직무, 의장·부의장 선거, 사무국에 대해 규정함

라. 제4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연간 회의일수,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및 안전, 개회식에 대해 규정함.

마. 제5장 위원회와 위원(안 제27조부터 제54조까지)

: 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위원 선임 및 개선,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연석회의, 구청장의 출석요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해 규정함

바. 제6장 질서와 경호(안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방청,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대해 규정함.

사.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 입법·법률고문, 의원연구단체, 공청회, 전원회의에 대해 규정함

아. 부칙(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

원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장 ·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

선투표를 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7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0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21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2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25조(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원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보건복지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4. 행정기획위원회 7명 이내

제30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행정기획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2조(위원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했다.

제33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3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가 개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개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가 휴회 중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의가 폐회 중일 때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개회 요구시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회 중 위원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5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 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7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48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인 사람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구정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 질문자 외에 2인 이내의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1문1답으로 할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구청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질서와 경호

제55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7조(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 의원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58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9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

제61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전원회의) ① 의장은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개최 이유 및 논의 요지가 기재된 요구서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원회의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및 논의 내용 등을 전원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원회의의 주관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 참석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전원회의의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 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 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 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 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 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

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6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 일 안향자 의원 외 14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국회통과 21. 9. 28, 시행일 22. 1. 13.)
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청구요건, 내용공포, 심사 및
수리 등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
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포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

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조례의 [] 제정
[] 개정 청구서
[] 폐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	---------------------------

이유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동(책중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입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 "괄호()"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서명 요청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7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일 양순임 의원 외 14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현행 조례 일체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북구의회의 청인과 직인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조)
- 나. 특수공인인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의2)
- 다.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해 정함(안 제5조의2)
- 라. 재교부 및 폐기를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종류)”를 “(공인의 종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제2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승인을 얻어 필요한”을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수”를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장이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를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도”로 한다.

1. 의장
2. 상임위원장

3. 사무국장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인영의 내용)”을 “(공인의 내용)”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류) ① 공인은 <u>의회청인</u> <u>과 직인으로 구분한다.</u>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u>
② 직인의 종류는 <u>다음과 같다.</u>	② ----- <u>다음 각 호와</u> -----.
1.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1. <u>의장</u>
2. <u>각 상임위원회 위원장</u>	2. <u>상임위원장</u>
3. <u>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u>	3. <u>사무국장</u>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u>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승인</u>	③ ----- -- <u>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u>

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인영의 내용) ①·② (생략)

<신 설>

인을 받아 -----
-----.

④ -----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 . -----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
-----.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의 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

	<u>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u> <u>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u>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u>사무국장</u> 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 ----- ----- ----- <u>의장</u> -----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u>사무국장</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u>의장</u> ----- -----.
제9조(공고) ① (생 략)	제9조(공고)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8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일 임현주 의원 외 14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개정
- 나. ‘법 제90조 및 제91조’를 ‘법 제102조 및 103조’로 변경(안 제1조)
- 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를 “성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로, “사무분장 등”을 “그 밖”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성북구의회 사무기구</u>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u>사무분장</u>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생략) ② 사무국은 <u>의장</u>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생략) ② 사무국장은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u>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u>소속위원회의</u>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u> 제1조(목적) ----- ----- <u>제102조 및 제103조</u>----- ----- <u>성북구의회의 사</u> <u>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u> <u>구의 설치</u>----- ----- <u>그 밖</u>----- ---.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울특별시 성북구</u> <u>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u> <u>다)</u>-----. 제3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의장</u>----- ----- ----- -----. 제4조(전문위원) ① <u>위원회에 전</u> <u>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u> <u>을 둔다.</u>

해 전문위원을 둔다.

<신 설>

② (생 략)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 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2항 및 제3항-----

-----.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9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 일 정해숙 의원 외 15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직무’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 제34조를 제42조로,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39조로 변경(안 제1조)
나. ‘직무’의 정의를 새롭게 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 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u> ----- ----- -----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u>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u> 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 ----- --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 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u> ---.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3.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u>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u>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u>직무로</u>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

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
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
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
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
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0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 일 진선아 의원 외 15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령 제83조를 제85조로 변경(안 제1조)

나. 별표를 신설하여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을 규정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일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당을”을 “일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에 따른 지급기준에”를 “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급기준) 위원회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구분(제7조의2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150,000원/1일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다목 상당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 ----- ----- -----.
제3조(선임방법) ① 감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3조(선임방법) ① ----- ----- ----- ----- ----- 「지방자치법」 제73조-----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변상) ① 감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수당을</u> 지급한다.	제7조(일비지급) ① ----- ----- ----- <u>일비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③ ----- -----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8 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에 - ----- -----. 제7조의2(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 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 비규정에 준한다.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1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 일 양순임 의원 외 15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3조를 제40조로,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36조로 변경(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7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2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일 진선아 의원 외 15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넣어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윤리강령의 준수 각 호의 문구를 새롭게 정비(안 제2조)
- 다. 검직신고의 의회 홈페이지 게시하여 공개(안 제15조)
- 라. 영리행위의 제한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은 구민”을 “주민”으로, “기초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
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을 “주민”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호 중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은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은 구민”을 “주민”으로, “공사행위에 관하여”를 “공사(公私)행위에 대하
여”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이를”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

장의 규정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5조”를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즉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로 한다.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u>시</u> 성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 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범 등에 <u>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 제46조에 따라 <u>서울특별</u> <u>시</u> ----- ----- <u>필요한</u> -----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 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 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 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 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 ----- ----- ----- ----- ----- ----- -----.
1. <u>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u> <u>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u> <u>구민의 대표자로서</u> 인격과 식 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 로써 <u>기초서울특별시 성북구</u> <u>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u> <u>다)의</u>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 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u>주민</u> ----- ----- ----- ----- -- <u>의원</u> ----- ----- -----.
2. <u>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u> <u>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u>	2. <u>주민</u> ----- -----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14조(윤리심사 등) ①·② (생략)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3. 공직자-----

-----.

4. 의회-----

-----.

5. 주민-----

----- 공사
(公私)행위에 대하여 -----
-----.

제14조(윤리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검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가 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장의 규정을 -----.

제15조(검직신고) ① -----

---- 제43조-----.

② ---- 법 제43조제3항-----
----- 별지 제1호 서식 -----.

③ (현행과 같음)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

<u><신 설></u>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u><신 설></u>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u>임하지 아니할 때</u> 2. <u>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 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될 때</u> ⑥ <u>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즉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u>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u> ②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회 기본 조례」 제31조----- ----- -----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직</u>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u>지방의회의 의원</u> 2. <u>헌법재판소재판관</u>,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u>규정된</u>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생략)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u>규정된</u>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 9.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u>임기개시</u>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직(職)</u>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u>지방의회의의원</u> 2. <u>헌법재판소 재판관</u>,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u>따른</u>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u>따른</u>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u>임기개시</u>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u>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⑤ <u>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u> ⑥ <u>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u>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⑤ <u>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u> 1. <u>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u> 2.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u> 3. <u>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u> 4. <u>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u> ⑥ <u>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u>
---	---

<신 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u>의원</u>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u>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u>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u>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u>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할 때</u>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u>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u>지방의회의원</u>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u>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u> ④ <u>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u>
--	--

<u><신 설></u> <u>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u> ①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u>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u>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제78조(의원의 퇴직)</u>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u>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u>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u>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제90조(의원의 퇴직)</u>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당될 때에는 <u>의원의 직에서 퇴직</u> <u>된다.</u> 1. <u>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u> <u>할 때</u>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 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 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 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 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될 때에는 <u>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u> <u>퇴직한다.</u>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 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 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3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 일 임현주 의원 외 14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법 제41조를 제49조로,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55조로 변경(안 제1조)
-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안 제4조)
- 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조서발의”를 “조사발의”로, “조사를 시행”을 “의결로 조사를 실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구 조례로 설치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5.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 중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50조”를 “영 제54조”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50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1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

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 -----.
제3조(조사)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u>조서발의</u> 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u>조사를</u> 시행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제3조(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조사발의</u> ----- ----- <u>의결로</u> <u>조사를</u> <u>실시</u> ----- -----.
제4조(감사·조사의범위) ① 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범위에서 실시하여	제4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구 조례로 설치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

야 한다.

<신 설>

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5.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제5조 (생략)

제7조(사무보조)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수 있다.

③ (생략)

제9조(감사·조사결과보고) 영 제50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사무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을 때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조사결과보고) 영 제54조-----

-----.

제10조(징계) -----
----- 영 제50조-----

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영 제5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 제11조(준용규정) -----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2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 일 정해숙 의원 외 15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회의 규칙 중 일부 내용이 기본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회의 규칙을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2장 회의(안 제2조부터 제44조까지)

: 개의, 회기, 의사일정, 의안의 제출·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부, 조례안 예고, 안건심의, 발언, 5분 자유발언, 표결의 선포, 표결방법, 투표절차, 회의록의 작성 및 배부 공개 등에 대해 정함.

나. 제3장 위원회(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 의사일정과 개최일자, 위원회 개최·심사·제안·발언·의사의결정족수, 공청회,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위원장의 보고, 회의록에 대해 규정함.

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 예산안의 심의, 수정동의, 의결, 재심요구, 결산의 검사 등을 정함

라. 제5장 징계(안 제64조부터 제72조까지)

: 징계의 요구와 회부, 심문 및 변경, 징계의 의결과 선포, 윤리심사자
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제2조(개회) 본회의 개회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회,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

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재회부) 본회의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7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변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

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

제20조(안전심의) ① 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전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3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29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회기 중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의원 1명이 5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총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④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30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2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4조(표결의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35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6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0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1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 제45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 문서 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 명

7. 의사

8. 표결 및 기명투표의 찬반의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료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

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제58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5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

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2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결산의 검사)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5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제6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위원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중에서 징계대상위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위원에게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6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

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1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72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u><삭 제></u>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u><삭 제></u>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서명 요청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3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1년 11월 16일 안향자 의원 외 15명
--------------	-------------------------------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변경(제명 변경)

나.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의 사무분장을 정함(안 제3조)

다.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1. 11. 16 . ~ 2021. 11.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청원등 소관안건”을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담회등”을 “간담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3조(사무분장)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의사팀 및 홍보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팀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팀

가.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나.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다. 의원의 등록 및 관리

라. 의회의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마.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

바.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사. 사정업무

아. 청사 및 차량 등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자. 의회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관수

카.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

타.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파.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하. 의회 국내·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거.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사팀

- 가.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
- 나.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 다. 본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 라. 본회의장 질서유지
- 마.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
- 바. 회의의 녹음·관리 및 회의록 열람 및 복사
- 사.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
-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회의준비·일반행정 지원
- 자.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
- 차. 의결문서의 이송·정리 및 발간
- 카. 의안청원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
- 타. 청원·진정의 접수 및 처리
- 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회의준비·일반행정 지원

3. 의회홍보팀

- 가. 홍보업무의 총괄
- 나.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다. 보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마. 의정백서, 성북의회소식, 성북의정, 의회안내 소책자 발간 및 도서 관리

바. 인터뷰자료의 작성 및 분석

사.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아. 의장 인사말씀 작성

자. 의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

차. 인터넷 생방송 운영 및 장비 관리

카. 사진촬영·편집 및 자료관리

타. 포토북, 인사카드 및 액자 제작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u>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 시성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 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u>사무국장</u>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u>각호</u>의 사 무를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u>기타</u>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 항 <u><신 설></u>	제1조(목적) ----- 「서울특 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 ----- ----- ----- <u>필요한</u> ----- -----. 제2조(사무국장) ①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 무국장”이라 한다)</u>---. ② ----- <u>각 호</u>----- -----. 1. ~ 15. (현행과 같음) 16. <u>그 밖에</u> ----- -- 제3조(사무분장) ① <u>의회의 사무 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 의사팀 및 홍보 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u>

사로 보한다.

② 팀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팀

가.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나.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다. 의원의 등록 및 관리

라. 의회의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마.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

바.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사. 사정업무

아. 청사 및 차량 등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자. 의회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관수

카.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

타.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파.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
신고

하. 의회 국내·외 친선교류
에 관한 사항

거.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
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사팀

가.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

나.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
진행

다. 본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라. 본회의장 질서유지

마.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
기획

바. 회의의 녹음·관리 및 회
의록 열람 및 복사

사. 회의록의 편집·발간·배
부 및 보존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회의준비·일반행
정 지원

자.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

차. 의결문서의 이송 · 정리
및 발간

카. 의안청원의 접수 · 인쇄 ·
배부 및 위원회 회부

타. 청원 · 진정의 접수 및 처
리

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 회
의준비 · 일반행정 지원

3. 의회홍보팀

가. 홍보업무의 총괄

나.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
립 및 집행

다. 보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마. 의정백서, 성북의회소식,
성북의정, 의회안내 소책
자 발간 및 도서 관리

바. 인터뷰자료의 작성 및 분
석

사.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
작

아. 의장 인사말씀 작성

자. 의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

차. 인터넷 생방송 운영 및 장
비 관리

카. 사진촬영 · 편집 및 자료

제3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 4. (생략)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신설>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신설>

관리

타. 포토북, 인사카드 및 액자

제작

제4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호-----
-----.

1. -----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

2. ~ 4. (현행과 같음)

5. -----
간담회 등 --

6.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
--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
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
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

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
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
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 감
독을 받는다.

